

#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강구덕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02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6년 8월 11일

발 의 자 : 강구덕, 남재경, 유동균, 주찬식,  
남창진, 김제리, 김기대, 황준환,  
박마루, 최호정, 박중화, 박성숙  
의원(12명)

## 1. 제안이유

동일 급지 내에 있는 노상·노외 공영주차장의 경우 시설의 노후화에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소지가 있는 바, 시설의 노후화 정도를 반영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시설 노후화에 따라 공영주차장 요금을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.(안 제6조제3항 신설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주차장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##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시설 노후도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주차요금 및 가산금) ①·② (생략) <u>&lt;신 설&gt;</u>	제6조(주차요금 및 가산금) ①·② (현행 과 같음) <u>③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시 설 노후도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다.</u>

#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## 1. 판단근거

-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(주차요금 및 가산금)제3항에서 “시장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시설 노후도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다”라고 제정함에 따라 비용 발생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해당

## 3. 미첨부 사유

- 조례안 제6조제3항 “시장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시설 노후도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다”고 했는데, 노후도에 따른 차등 부과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

## 4. 작성자

시 의 회 사 무 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 승 우

정 책 조 사 팀 장 여 차 민

예 산 분 석 관 임 준 혁

☎02-3705-1281, e-mail(limjh9438@seoul.go.kr)